-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제2446호

2020. 05. 12.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0. 03. 02. 양천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20. 05. 01. 행정재경위원회

다. 상정일자 : 제277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2020. 05. 12.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안전국장)

가. 제안이유

양천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위해 운영된 교육발전위원회 주요 역할이 교육 관련 다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동석)

가. 개요

본 폐지조례안은 2014년 12월 26일 제정·시행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다른 교육 관련 위원회와 유사·중복되어 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현행 조례 개요

- 본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심의 중 위원회 위원 수가 30명→20명으로 수정된 후 2014년 12월 26일 시행된 조례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회의 운영, 수당 지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조례의 제정 취지는 민·관·학이 함께 교육발전 방향 및 건전한 정책제안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협력해 나가기 위해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 및 교육정책 제안 등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정하고, 제3조에서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구의원, 교육전문가, 각급 학교장, 학부모, 교육관련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토록 정하고 있으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그리고 회의수당 및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규정됨.

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는 조례가 제정(2014.12.26)된 후 약 1년여의 기간이 경과된 2015년 1월 5일 20명의 위원을 위촉(2015.10.5.~2017.10.4.)하여 제1

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제2기 위원회는 2018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4일까지 20명을 위촉하여 2년간 1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된 바, 이는 제6조에 따른 연2회 정기회 개최 횟수를 따르지 못한 것임.

【표 1】 교육위원회 구성 현황

구분	제1기	제2기
위촉기간	2015.10.5.~2017.10.4	2018.3.5.~2020.3.4
위촉 위원수	20명	20명
회의개최	3회	1회

【표 2】 교육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구 분	제1기	제2기
위촉기간	2015.10.5.~2017.10.4.	2018.3.5. ~ 2020.3.4.
회의개최	3회	1회
회의개최일	2015.10.5. / 2016.9.7. / 2017.9.13	2018.3.22

라. 폐지의 필요성

- 현행 조례 제2조의 교육발전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면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2014.12.26.) 이후 교육관련 개별조례가 각각 제정되어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각각 다른 조례의 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동일한 업무를 심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및 업무의 일관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봄.

【표 3】 교육관련 개별조례 현황

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기능)	교육관련 개별 조례	비고
1. 교육발전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7.14. (제정)
	제6조(혁신교육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혁신교육사업의 정책 방향 및 혁신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2019.12.24. (일부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드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3. 교육혁신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7.4. (제정)
	제8조(혁신교육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2. 혁신교육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	

4. 방과 후 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방과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방과 후 돌봄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019.4.30. (제정)
5. 학교안전망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	2012.6.20. (제정)
6.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평생교육진흥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사업 및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011.8.1. (전부개정)

7.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양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독서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014.12.26. (제정)
8.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혁신교육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혁신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획·조정한다. **4. 민·관·학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 **5.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2019.7.4. (제정)

- 또한, 종전의 교육발전위원회 회의 운영을 살펴보면, 조례 제6조에 따라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1기 교육발전위원회는 3회(정례회 2회, 임시회 1회)를 개최하였으나, 제2기 교육발전위원회는 정례회만 1회 개최되는 등 활동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여짐.
- 제2기 교육발전위원회의 임기는 2018년 3월 5일부터 2020년 3월 4일까지로 폐지조례안이 제출된 3월 2일 이후 임기종료일이 20여일이 경과되었으나 재위촉되지 않아 미구성된 상태임.

○ **종합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제정된 이후 유사한 기능을 가진 교육관련 개별조례가 다수 제정됨에 따라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폐지되어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협의하던 기능에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고 조례와 관련되어 진행 중인 사업이 없어 폐지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봄.

- 다만,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에도 위원회의 기능 중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이 각각 독립된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어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중복됨을 지적하였으나, 집행부의 필요성 요구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향후 조례 제정 시 기 제정된 조례의 위원회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첨부】

양천구 교육발전위원회 위원 현황

위촉기간 : 2018. 3. 5 ~ 2020. 3. 4(2년)

연번	직위	성명	성별	직책	비고
1	위원장	김수영	여	구청장	
2	위원	한혜란	여	전)혁신교육지구 민관학거버넌스 공동위원장(민간대표)	
3	〃	임정옥	여	구의원	
4	〃	윤병근	남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5	〃	모상기	남	신서고등학교 교장	
6	〃	조등호	남	전)양서중학교 교장	
7	〃	임동찬	남	영도초등학교 교장	
8	〃	김미숙	여	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9	〃	박영희	여	전)유치원연합회 회장	
10	〃	박현아	여	전)혁신교육지구 민관학거버넌스 분과장	
11	〃	육용희	여	어린이책시민연대 활동가	
12	〃	이경란	여	전)혁신교육지구 민관학거버넌스 분과장	
13	〃	이나리	여	영도초등학교 교사	
14	〃	이수희	여	전)혁신교육지구 민관학거버넌스 분과장	
15	〃	이진영	여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대표	
16	〃	이창선	남	공단기 학원강사	
17	〃	정진화	여	강신중학교 교사	
18	〃	조인숙	여	전)혁신교육지구 민관학거버넌스 운영위원회 위원	
19	〃	김정윤	남	행정안전국장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의원 9명, 출석의원 7명 만장일치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